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425호

신반포3차·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5호(2017년 7월 13일)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된 반포아파트지구(1주구) 반포동 1-1번지 일대 신반포3차·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대하여 『건축법』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19년 7월 23일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의결되었으므로 『건축법』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하고 지정 목적, 위치,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19년 12월 19일
서울특별시

1. 지정 목적 (변경없음)

- 가.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,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,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,
나. 한강변 접근 보행환경 개선 및 수변경관의 공유 등 한강변 주거지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변경지정 하고자 함.

2. 특별건축구역의 위치, 범위 및 면적

지구명	위 치	범 위	면 적	
			기 정(㎡)	변 경(㎡)
반포아파트지구(1주구)	서초구 반포동 1-1일대	신반포3차,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	168,467.6	168,472.6

3.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

가.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

구역명	면 적(㎡)	용 도	명 칭	대지면적		최고층수	비고
				기 정(㎡)	변 경(㎡)		
신반포3차,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	168,472.6	주택용지	A-1	119,799.8	119,799.8	35층(110m) 이하 [한강연접 첫 주동 높이 10-15층(48m)이하] (필로티포함)	-
		분구중심	B-1	7,370.4	7,370.4	5층 이하	-
		주구중심	C-2	508.3	508.3	5층 이하	-
		주구중심	C-3	1,545.4	1,545.4	5층 이하	-
		문화시설	D-1	3,535.4	2,324.1	5층 이하	분할조성
		공공청사	E-2	-	1,211.3	5층 이하	D-1을 분할조성

※ 세대수, 면적, 용도 등 세부개요는 특별건축구역 관계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특례적용사항(변경없음)

구역명	특례적용사항	적용취지
신반포3차,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	『건축법』 제61조 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: 적용배제	-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로 고층과 중저층이 배치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형태구현 및 통풍확보 가능 - 단지 내 주거성능 및 거주민 프라이버시를 저해하지 않고

정비구역	※ 단, 대상지 외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, 대상지 내부에만 적용함	주거성능기준을 만족하게 하며, 다양한 주동 및 휴먼스케일의 외부공간 계획 및 통경축 확보 가능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4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5. 건축물의 설계,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

기 정	변 경
해당사항 없음	건축설계 : 경쟁입찰 (2017년 5월 27일 설계자 선정)
	공사감리 : 경쟁입찰 예정(주택법 제43조)
	건축시공 : 경쟁입찰 (2001년 5월 27일 시공자 선정)

6. 기타 사항

: 특별건축구역변경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(전화 : 02-2133-7137), 서초구 주거개선과 (전화 : 02-2155-7342)에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426호

서울특별시 도로건설·관리계획(2021~2030) 고시

도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도로건설·관리계획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2월 19일
서울특별시장

1. 개요

☐ 수립배경

○ 도로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소관 도로에 대한 중·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로 건설 및 확장 추진하고자 함.

☐ 계획의 범위

- 시간적 범위 : 2021년 ~ 2025년 (장기목표년도 2030년, 기준년도 2017년)
- 공간적 범위 :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접 수도권 권역

☐ 계획의 성격

- 「도로법」에 의한 서울특별시도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법정계획
- 서울특별시도 건설 및 관리의 목표 및 방향제시
- 중·장기 사업추진 계획 수립

2. 도로건설계획 주요내용